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과 추진방안

Propriety of Establishing National Foundation Day and Some Measures to Promote It

제 성 호*
Jhe, Seong-Ho

〈 목 차 〉

- I. 서 언
- II. 건국의 개념과 시기
 - 1. 건국의 개념
 - 2. 건국의 시기
- III.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 IV.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건국이념
 - 1. 대한민국 건국세력
 - 2. 대한민국 건국이념
- V.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적 의미와 정당성
 - 1. 건국의 정치적 의미
 - 2. 건국의 정통성 및 정당성
- VI.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그 방법
 - 1.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
 - 2. 건국절 제정의 방법
 - 3. 건국절 제정 추진방안
- VII. 결 어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고일 : 3월 9일, 심사일 : 4월 7일, 게재확정일 : 4월 15일)

I. 서 언

대한민국은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이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해방절’ 내지 ‘해방 기념일’에 해당되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한다. 이른바 ‘광복절’이라는 이름 아래 매년 그렇게 지내 왔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날은 자유 대한인들이 새 나라를 건설해 만방에 공포한 날이 아니다. 또한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도 아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해방 그 마저도 한국인들의 힘만으로 쟁취하여 얻어낸 것은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지만 그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한반도는 전승국가의 군대들인 미군과 소련군의 軍政 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군정은 국제법상 敵國 領土(한반도는 일본 영토의 연장으로 간주)에 대한 軍事 占領權에 기한 조치, 곧 분할점령 및 분할통치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실제’ 상으로는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解放을 보았지만, 법형식론 상으로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로 관념되었던 것이고, 또한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의 해외 영토(한반도)에서 占領高權 내지 占領統治權을 행사했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¹⁾ 이 날은 대한민국 건국일이자 일제 식민통치 및 미군정으로부터 완전 독립한 독립기념일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확한 자아인식 및 국가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국절을 기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개념과 시기, 건국과정,

1) 한국의 국제법적 독립은 이를 확인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한 일자인 1952년 4월 28일에 완전히 실현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국제법학자들 중에서 이 같은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세력과 건국정신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 및 그 방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건국의 개념과 시기

1. 건국의 개념

대한민국 건국²⁾은 자유 대한인들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이란 국호 아래 근대적 의미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권을 대내외에 발현하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물론 이는 한민족의 의식적인 정치행위로서 民族 自決權(a right of self-determination) 행사의 정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의 體貌를 드러내고, 국가로서의 격과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통치권을 발현하게 되었다. 요컨대, 건국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 건설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2. 건국의 시기

대한민국 건국의 시기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날이다. 이 날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① 국민, ② 영토, ③ 정부, ④ 국제관계 창설능력, 즉 국제법상 국가의 4가지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었다.³⁾ 대한민국은 건국 직후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당당하게 국제법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2) 국제법학자들은 건국이라는 용어보다는 국가의 성립 혹은 국가의 형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일찍이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1조는 ① 영구적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② 확정된 영토(a defined territory), ③ 정부(government), ④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을 명시하였다. 山本草二, 國際法, 新版, 有斐閣, 1994, pp.124-126;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 보완수정판, 일조각, 2007, pp.116-117. 통상 국내법(헌법)에서는 국가성립의 제3요건 ‘정부’와 제4요건 ‘국제관계 창설능력’을 통합해 주권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차이점)은 국내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법상 주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정부가 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자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날 대한민국에 대해 ‘事實上의 國家承認’(de facto recognition of a state)을 부여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다. 즉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날인데, 어떻게 정부 수립이 건국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이 날 미국이 부여한 승인은 정부의 승인을 구성할 뿐 국가의 승인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이나 주장은 국제법의 기초에 대한 無知의 所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① 국민, ② 영토, ③ 정부, ④ 국제관계 창설능력으로 구성되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승인은 ‘정부 승인’ 즉 이승만 초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외적 대표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승인,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한다는 점에 대한 승인(국민 승인=통치 대상 승인),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를 지배한다는 점에 대한 승인(영토 승인=대한민국의 물적·영토적 관할권 승인), 이승만 정부가 국제관계 창설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승인(국제관계 창설능력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에서도 국가승인의 핵심은 정부승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국가의 성립 시에는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⁴⁾ 설령 이 경우 정부 수립이나 정부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수립이나 국가승인의 다른 표현이거나 또는 그것을 내포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신정부의 승인은 동시에 국가승인을 의미(내포)하는 경우도 있다.⁵⁾

4)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은 신 국가 성립시 “신국가의 승인은 동시에 신정부의 승인을 포함하고, 역으로 신정부의 승인은 신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통상 국제법에서 다루는 정부승인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신정부를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승인은 이러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 국가 성립시에 정부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국가승인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며, 이 같은 정부승인의 이중적 의미 보유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한기, 『국제법학(상)』, 중판, 박영사, 1982, p.155; 김명기·김성훈, 『국제법학』, 일신사, 1980, p.56; 최재훈 외, 『국제법신강』, 2판, 신영사, 2004, pp.119-120; 이병조·이중범, 『전개서』, p.132;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삼영사, 2010, p.369. 따라서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라고 승인하였을 때 이는 형식적으로는 정부승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정부승인은 국가승인의 의미와 성격을 아울러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 예컨대, 대한민국 외에도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선언을 한 이스라엘과 1958년 2월 21일에 성립한 아랍공화국 등에 대한 승인은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西俣昭雄, 『國際法研究』, 明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의 날인 동시에, 국제사회나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이기도 하다. 곧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8월 15일을 맞아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이 날 우리 정부에 대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외교전문을 보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⁶⁾ 이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제기하는 주장으로서 국제법적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혹은 대한제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한반도에서 통치권을 전혀 행사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조선총독부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의 통치권 행사를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상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정식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와도 다른 것이었다.⁷⁾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을 비롯해서 그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국제법상의 정부승인(recognition of a government)을 받지 못하였다. 朝鮮民國大會의 이름으로 발표된 「임시정부 선포문」에서는 “조선의 국토는 아직 일본 군대의 점거하는 바 되고 있으나, 이는 벨기에가 독일의 점거한 바 된 것과 같이 조선의 주권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역설하였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⁸⁾ 당시의 국제사회는 일본의 병합, 곧 대한제국의 소멸⁹⁾을 널리 인

好社, 1970, p.51.

6) 이 밖에도 1919년 4월 11일, 1919년 9월 16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7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중 4권에 수록된 1945년 4, 5월 임시의정원회의 속기록에 근거한다. 여기서는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제26주년 기념일”이란 기록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후자는 1919년 9월 16일은 국내외에 수립되어 있던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된 날인데, 이 날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키백과,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1%B4%EA%B5%AD%EC%A0%88_%EB%85%BC%EC%9F%81). 위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다.

7) 제성호, 상해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14집 1호(2012), pp.205-215 참조.

8) 신기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지위, 한우근 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

정하였기 때문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 廣東政府(護法政府)를 수립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孫文에게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내 거절당하였다. 당시 孫文은 “프랑스 租界 안에서 수립되고 그곳에 있는 정부를 승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조선 영토 내이면 어디라도 좋다. 당신들이 신의주 이권 청진에서이건 단 며칠이라도 행정권을 행사하기만 한다면 곧 승인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¹⁰⁾ 이는 실효성 있는 정부가 그 영토 위에 세워져야 승인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¹¹⁾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던 중국 정부마저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친 것은 국제법상의 정부승인의 요건 충족과 국제사회의 냉엄한 정치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나라의 태도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¹²⁾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두고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의 견지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및 민족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자유 대한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한 행위’ 즉 건국의 ‘착수’ 혹은 건국의 ‘토대 마련’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한편 일부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군 왕검이 하늘(나라)을 열었다는 개천절은 한민족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날로서 건국일로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의 나라 대한민국이지 부족사회 내지 부족국가에 지나지 않는 고조선이 아니다. 따라서 개천절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보사, 1969, p.944.

9) 대한제국의 소멸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보론을 참조.

10)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p.72.

11) 신기석, 전개논문, p.944.

12) 제성호, 전개논문, p.201. 1945년 11월 23일 김구 임시정부 주석 등 임정 요인 1진은 정부 대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고국의 땅을 밟았던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어느 나라로부터도 국제법상 정식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13) 상계논문, p. 218.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의 법적 의미에 관해서는 같은 논문, pp. 221~222 참조.

현재의 광복절, 곧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해방일에 해당되는 이 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의식적으로 형성 내지 건설하는 정치적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날을 건국일로 간주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Ⅲ.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번의 고비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요 사건만 적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43년 12월 1일 미·영·중의 수뇌 Cairo 선언 채택(한국의 해방 및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한국의 독립 약속),¹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1945년 9월 8일 미군정 실시, 1945년 10월 스탈린의 비밀지령에 따른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1945.11.19),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의 신탁통치안 논의,¹⁵⁾ 좌·우익 간의 친탁 대 반탁 투쟁, 19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1946년 6월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 1947년 9월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에 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키로 하는 유엔 총회 결의 채택, 1948년 1월 북한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입북 거부,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총선거 실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등이 그것들이다.¹⁶⁾

14) 카이로선언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의 3대국(미국·영국·중국을 가리킴. 필자 주)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경로를 밟아’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을 결의한다”(The aforesaid three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IX,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393; 김명기,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화학사, 1980, p.8에서 재인용.

15)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신탁통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16)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계수,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과 국제연합, 『국제문제』, 통권 제288호(1994.8), pp.21-28;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과정, 『대한민국: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국방부, 2009), pp.71-114.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유엔화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 곧 유엔 총회의 개입에 따른 통일정부 수립 노력과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분리독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개재한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다. 즉 ‘① 5.10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 → ② 5.31 국회 구성(198명) 및 개원 → ③ 7.17 헌법 제정·공포 → ④ 7.24 초대 대통령 선출 → 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의 수순을 밟은 것이었다.¹⁷⁾ 이 중 1948년 8월 15일의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 국가(New Nation Building)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에 산파역을 했다. 유엔 총회 산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제헌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 관리, 감시 및 협의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슈티코프(Terenti Fomitch Stykov) 북한 주둔 소련군 총사령관(대장)과 김일성의 방해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지역에 입북하지 못하였고, 총선을 협의·감시할 수 없었다. 건국 이후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결의 제195(III)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 즉 이 결의에서는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소련 및 북한의 거부로 총회 결의 제112(II)호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어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 지역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한편 건국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1952년 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서도 확인된다(후술 참조). 이와 관련해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맞기는 했지만(이 점에서 현행 광복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절’의 성격이 강하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해외 식민지¹⁸⁾로 간주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 탓에 전승국인 연합국이 한반도에 진주하여 패전국 영토 일부에 대해 占領高權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것이 3년간의 미·소 양국의 軍政으로 나타났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관돼 있다.

17) 이현표, 태극기를 지킨 건국 대통령, 이승만, 『NewDaily칼럼』, 2015.3.4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676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국 과정에서 친북좌익 세력은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다고 모략하면서,¹⁸⁾ 2·8 대구 폭동, 제주 4·3사건 및 여순 반란사건 등을 일으키는 등 대한민국 건국을 꾸준히 방해하였다. 소련의 하수인 김성주는 만주의 동북항일연군(팔로군) 소속으로 1941년 3월 극동 러시아로 탈출하여 88정찰여단 제1대대장(대위)으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김성주는 이 때 소련군을 따라 김영환이라는 假名으로 평양으로 들어왔고, 이후 소련군의 지시를 받아 각종의 정치공작을 전개하였다. 1945년 10월 14일 로마넨코(Andrel Alekseevich Romanenko) 소련군 민정사령관(소장)이 평양시민들 앞에서 김성주를 ‘김일성 장군’이라고 둔갑시켜 소개한 뒤부터 김일성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¹⁹⁾

IV.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건국이념

1. 대한민국 건국세력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한 마디로 자유 대한인들 혹은 자유민주세력이었다. 그들은 ‘유길준 → 서재필 → 안창호 → 이승만’ 등으로 이어지는 문명 개화파의 후예요,²⁰⁾ 항일 독립운동의 태극기세력이요, 열린 민족주의세력이었

18) 이와 관련, 친북좌익세력은 1946년 6월 4일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 방문 시 행한 소위 ‘정읍 발언’을 문제 삼는다. 정읍 발언이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동위원회(共委)가 재개될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언명을 말한다. 하지만 정통적 견해에 따르면, 정읍 발언은 당시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전략을 꿰뚫어 본 자유 대한인의 현실적 대응이었다는 유력한 평가가 있다. 『중앙일보』(“이승만 정읍발언은 소련 전략 꿰뚫은 현실적 대응”), 2008년 7월 18일자; 이주영, 이승만과 그의 시대, 기파랑, 2004, pp.111-112.

19)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pp.72-83; 김필재, 이승만 항일 없는 교과서, 김일성 항일만 조작 부풀려, 『NewDaily』, 2011년 5월 2일자(<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7365>); 김홍일, 제7장 해방과 제3의 김일성 -이명영 집필 《김일성 열전》, 『중앙일보』, 1974년 8월 2일자(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82973); 고두현, 보천보 습격 사건, 『한국경제』, 2014년 6월 9일자 참조.

20) 이주영, 조선 멸망 교훈과 건국세력 형성, 국방부, 대한민국: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 2009, pp.50-69.

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민족적·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이 가장 민족적인 인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초대 이승만 정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각 분야에서 광복투쟁과 항일운동에 매진한 분들로 채워져 있어, 초대 정부는 항일거국내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국회의장 신익희는 항일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역임했다. 대법원장 김병로는 대표적인 항일지사이자 변호사였다. 그 밖에도 부통령 이시영은 임시정부 재무총장, 국무총리 이범석은 임시정부의 광복군 참모장이었으며,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법무장관 이인, 재무장관 김도연, 문교장관 안호상에서 무임소장관 이청천, 이윤영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항일·독립 운동가들이었다.²¹⁾

따라서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편향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건국주도 세력의 민족정통성에 비한다면, 같은 시기에 들어선 북한 정권은 철저히 공산주의자들로 채워졌다. 특히 북한 정권에는 감히 ‘민족’을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민족 지도자로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한 조만식 선생을 살해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소련 연해주지역에서 스탈린군의 하급 정보장교역할을 하던 33세의 김일성이 최고통치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탈린과 소련군의 지시를 잘 수행할 수 있는냐의 기준에서 김일성이 가장 적격자로 선택됐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정권은 친소(親蘇) 세력으로 이루어진 반민족적인 정권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2. 대한민국 건국이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 정치질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민주통일을 아

21) 이신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현대사포럼, 2011, pp.14-15 참조.

우르는 상위개념이다.²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주권이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에게 존재하는 국가를 말한다. 민주공화국은 비군주국가, 자유국가, 국민국가, 반독재국가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를 배격함(반전체주의)은 물론, 인민과 민중에 의한 이른바 ‘계급의 지배’를 반대하는 의미를 내포한다.²³⁾

V.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적 의미와 정당성

1. 건국의 정치적 의미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건국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혹자는 ‘건국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²⁴⁾ 건국이 혁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건국은 ‘공화국’의 성립과 출발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수천년 동안 한반도 상에서는 군주국만이 존재하였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은 군주국을 극복한 최초의 국민국가, 즉 ‘주권재민 내지 국민주권’의 나라 건설을 응변하는 것이었다.

둘째, 건국은 공산세력의 적화혁명 노선에 대항하여 이룩한 자유민주투쟁의 산물이었다. 사회주의 공산혁명만이 혁명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혁명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 또한 혁명이며, 이를 ‘자유혁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건국은 식민지 시대의 終焉과 함께 만방에 새로운 나라(새 한국)의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물론 식민지 잔재 청산에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特委)²⁵⁾ 활동의 중단 등 불완전한 면이 노정된 점이 있기

22)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7쇄, 법문사, 2005, pp.139-142 참조.

23) 상계서, p. 114.

24) 김덕, 건국 혁명, 산업화·민주화로 결실, 『자유공론』, 2008년 9월호, p.82; 이인호, 혁명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 -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 『한국연구재단 웹진: 석학 칼럼』 2010년 7호 (2010.9)(<http://ssc.nrf.go.kr/>).

는 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극복이라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될 것이다.

넷째, 이 밖에도 건국은 조국 근대화·산업화 혁명의 초석을 놓은 사건이었다.²⁶⁾

건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한 것으로, 민족사적으로 볼 때 ‘올바른 체제가치의 선택’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함축한다. 지난 60여년의 역사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²⁷⁾ 또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자에게는 승리를, 반면 북한공산주의자 및 남한 내 친북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 좌절 내지 패배를 뜻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를 추종한 북한의 지난 60여년의 궤적은 실패요 잘못된 역사의 길이었다고 하겠다.

2. 건국의 정통성 및 정당성

일반적으로 정통성(legitimacy)이라고 함은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전통과 문화에 대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원동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25) 반민특위에 관해서는 인터넷 두산백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참조.

26) 이인호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는 3중적인 것이었다. 첫째는 우리가 일제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왕조시대의 “백성”이나 일제하의 차별 받는 식민지 “신민,” 미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전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승격했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 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바로 그 직전 까지 있어 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었다. 이인호, 위의 글 참조.

27) 대한민국은 1950년 1인당 GNP 67달러에서 지금은 2만달러가 넘어서 자유, 복지, 풍요를 누리지만, 북한은 현재 1인당 GNP 800-1,000달러에 불과해 주민들이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것은 물론, 세계 최악의 독재와 인권탄압, 3대 부자세습 하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²⁸⁾

첫째, 국가적 법통성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 상해 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²⁹⁾

둘째, 정치적(민주적) 정통성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범국민적 지지 아래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은 자의적·폭력적 지배와 전제정치를 배제하고 민의의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고 지향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민족사적) 정통성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개국 이념인 弘益人間的 정신을 구현하며, 또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넷째, 국제적 정통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결의 제195(III)호에 의해 한국 정부(이승만 정부)의 유일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정부)이 한반도에서 정통정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을 의미한다.³⁰⁾

다섯째, 문화적 정통성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고, 충·효·예, 음양오행의 조화정신으로 민족화합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두레 공동체 정신(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과 우리 민족의 혼과 열을 상징하는 국가상징물, 곧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을 계승하고 있다.³¹⁾

28) 제성호, 건국절 제정해야 한다, 『경제풍월』, 2011년 10월호, pp.53-54; 국방부 정훈국, 정신교육 기본교재,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2008), pp.62-68 참조.

29) 대한민국의 법통성에 관해서는 국토통일원, 민족사적 정통성 연구, 국통조사 86-7-46(재), 1986, pp.221-329; 배재식, 남북한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21권 1·2호 합병호(1976), pp.227-245;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pp.22-23 참조.

30) 김명기,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28권 제1호(1983.6), pp.5-30.

31) 국가 상징물에 관해서는 국군정신전력학교, 국가상징해설 -태극기·애국가·무궁화, 1985, pp.11-146; 제성호,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법조』, 통권 제632호(2009.5), pp.5-37 참조.

VI.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그 방법

1.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

오늘날 나라마다 건국을 한 날이나 독립을 이룩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을 한 날을 기념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건국절을 제정하여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을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밖에도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을 추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³²⁾

첫째, 대한민국의 진정한 國格 갖추기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의 뿌리를 망겔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존립·유지·발전의 정신적·제도적·이념적 토대가 된다. 곧 국민들에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와 정당성을 올바르게 인식케 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건국절 제정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나라사랑’ 곧 대한민국 사랑 혹은 애국심 고취를 위한 정당한 근거와 계기를 제공한다.

넷째, 건국절 제정은 중북·친북좌익·반헌법/반국가세력의 국가 정체성(특히 국가상징물) 훼손행위를 근절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이념 내지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통일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건국절 제정은 필요하다. 건국절 제정 및 기념은 태극기 노선에 의한 자유민주통일 추진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한편, ‘인공기’ 또는 ‘한반도기’ 노선에 의한 통일 추진, 즉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반헌법적’ 행태를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결국 건국절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32) 제성호, 전제논문(주 28), p.54.

2. 건국절 제정의 방법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념해야 할 국경일 내지 경축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률로써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³³⁾ 그리고 국경일 기념행사에 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다.³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3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여기서 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33)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1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3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건국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하여 건국절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법 제2조를 개정하는 방안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안>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안>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건국절 8월 15일
5. 개천절 10월 3일
6. 한글날 10월 9일

위의 <1안>은 매년 기념할 국경일의 날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3호에 광복절과 건국절을 함께 병기한 것이고, <2안>은 광복절과 건국절이 서로 다른 개념의 국경일이고, 각각의 본래 날짜도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로 서로 다르므로 제3호와 제4호로 따로 명기한 것이다. 광복절과 건국절의 유래 및 본래 일자가 다르므로 법리상 <2안>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도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안>의 경우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³⁵⁾

한편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제2조의 광복절과 건국절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념한다”로 규정하고, 현재의 제3조는 제4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동법이 국경일의 종류와 일자만을 정하고 있고, 기념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광복절과 건국절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념한다는 내용을 굳이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2개의 국경일을 같은 날짜에 기념할 경우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함께 기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논란의 빌미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국경일에 건국절을 추가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통과와 이후 본회의에서의 찬성표결로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먼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의 수렴 과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3. 건국절 제정 추진방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는 문제는 건국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³⁶⁾ 이런 시각에서 다음에서는 두서없이 건국절 제정의 추진전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

35) 19대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2014년 9월 2일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572)은 <1안>을 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

3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11), pp.2-3.

디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세미나 및 공청회, 메이저 신문 지상 광고 등을 통해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둘째, 가칭 ‘건국절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건국절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관심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청원을 제기한다.

넷째, ‘범국민운동본부’는 해당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xx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섯째,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국회의원실을 방문,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에도 다각적인 압박 및 설득 방법을 모색한다. 예컨대, ‘범국민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반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표시하고, 이들을 인터넷 상에서 퍼나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널리 주지시킨다.

여섯째, 건국절 제정을 위한 청년 서포터스를 만들고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가두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다.

일곱째, 건국 유공자 및 역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입법을 촉구하도록 한다.

입법의 결실을 거둘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경우 201x년에 건국절이 제정되어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 기념식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결 어

위에서 필자는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반도 상에서 최초의 국민국가를 건설한 날, 곧 건국일을 건국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일은 기념하지 않으면서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날만 기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인 셈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대한민국 건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최선은 아니었으나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1948년 당시에 전 한반도에 자유민주의 통일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사회주의 계급체제 국가 건설을 피하면서, 일단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만든 것은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苦肉之策)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먼저 분단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북한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불완전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체제모형을, 나아가 완전통일의 원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지금은 21세기 탈 국경 및 개방화 시대에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유, 복지 및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였으므로 한반도에서의 통일국가 건설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누구나 건국의 의미와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내면화하고, 이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우선적으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국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건국절을 제정·기념하는 것이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격하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은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 나아가 국가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것이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해임시정부 수립 그 자체를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및 찬란한 역사를 폄하·매도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할 경우 대한민국은 서서히 몰락하여 파괴 및 해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건국이념 및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제2의 자유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 반체제세력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시대적 상

황에 맞게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켜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 정치인과 위정자들은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의 양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국, 호국, 애국세력은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한편,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요컨대 21세기 중에 반드시 선진강국, 글로벌 코리아, ‘보다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중국에는 자유민주의 통일한국을 이룩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자신의 근본과 뿌리를 올바르게 알고 국가이념에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곧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충실할 때 위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건국절의 제정이 중요한 것이다. 건국절이 이른 시일 내 제정되어 기념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부록> 대한민국 건국의 이해와 관련된 보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과 소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법상 (신생)국가의 성립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처녀지에서 국가 성립, ② 합병(fusion, incorporation, amalgamation), ③ 분열(disunion, dismemberment), ④ 분리 혹은 분리독립(secession, 식민지가 식민모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거나 무력항쟁을 통해 본국에서 독립하는 경우)이 그것들이다. 다음 국가의 소멸 역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합병, ② 병합(annexation), ③ 분열, ④ 분할(partition)이 그것들이다.

1910년의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에 해당되며, 이것이 일단 성공을 하여 대한제국은 ‘법적으로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당시 국제사회는 일본의 병합이 제국주의적 강압 내지 침략의 산물이었던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냉혹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종래 구미 열강이 대한제국에 개설하였던 외교공관(대부분 공사관)들은 거의 다 영사관(즉 일본의 해외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보호 임무를 담당하는 본국의 대외기관)으로 전환·격하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법적 소멸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표적인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은 일본이 경영하는 식민지로서 일본 영토의 일부였던 Korea로부터의 패퇴 및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국 등 연합국은 패전국 영토에 진주하여 점령통치를 하였다. 일본 본토 내에는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가 설치되었으며, 한반도에도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여 점령고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 점령지역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성립의 제4 유형인 식민지(Korea로 지칭되는 한

국)의 분리독립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는 태평양전쟁에서의 전승국인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 조항은 최종적인 영토처리(일본의 영토 한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본은 한국³⁷⁾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고 규정하였다. 곧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의 독립을 명문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연합군의 점령고권(행사)의 종식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립 시점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며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인 동시에, 이 날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것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모든 당사국(연합국과 패전국 일본)들이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사실상 종료되고 한국민의 노예적 혹사에서 해방된 시점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는 그 대신 미·소의 군정하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법적·정치적 독립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론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의 국제법학자들이 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舊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수교협상 과정에서 1910년 8월 한·일 합방조약 체결 당시에 ‘당초부터(혹은 원천적으로) 무효’(void ab initio)로서 일본의 식민

37) 여기서 Korea의 의미에 대해 일부 학자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지역적 개념의 Korea로서 전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는 Korea 앞에 별다른 수식어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전 한국’(all Korea)을 지칭한다고 보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치는 불법적(불법강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와는 달랐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은 조약체결의 과정에서 강제력의 사용 등 부당한 면이 있었기는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이른바 ‘부당유효론’을 원용한다. 1948년 8월 15일 시점부터 비로소 (장래에 대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1965년에 확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미’(already)라는 副詞를 첨가시켜 한·일 양국 정부는 각기 아전인수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혹은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양국 간에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합의(조약규정)’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결과로 우리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과 역사학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이미 당초부터 무효였던 만큼, 일본의 식민통치는 불법이고, 따라서 대한제국은 식민통치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기간 내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것으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국제사회(특히 서구 열강)는 일본의 병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존재하였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과 식민 모국 간에 체결된 조약(기본관계조약 또는 분리독립 인정조약 등)에서는 식민지 설치와 그 시대의 행위 일체를 불법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양 극단의 견해, 즉 한·일합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로서 식민통치 전체가 불법무효라는 주장과 한·일합방조약은 국제법상 전적으로 유효하며 그에 따라 식민통치 전체가 유효한 것으로서 동 조약이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한국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 사이에서 한 가지 절충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 견해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백진현 교수가 1990년대 초 서울국제법연구

원이 주최한 연구모임에서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내지 정복을 인정하여 대한제국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일본의 식민통치는 일단 유효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주권을 발현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1910년 시점까지 주권을 遡及的으로 회복(reversion to sovereignty)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곧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식민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잔재 내지 과거 청산을 위하여 이 기간 중에 ‘주권을 소급적으로 회복했다는 擬制’를 활용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이 직접 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청구권 문제를 타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충적인 견해(개인적으로 이 견해는 현실성과 유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한제국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① 한국의 입장(민족주의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국제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② 일본의 입장, ③ 국제사회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민족주의에 경도된 입장³⁸⁾은 우리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200여 개의 나라들이 동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international) 규범이 통하는 것이지, 민족주의적(national) 논리가 타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소멸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기정사실(faits accomplis)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35년간 식민통치가 실시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무효를 따지는 것은 법리적 측면의 과거청산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1910년 8월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의 제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한국 측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구성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를 근거로 해서 일본이

38) 이 같은 입장에서는 1910년 이른바 한·일합방에 의해 대한제국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식민지배 기간에 일제가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强占했다고 본다.

한국 측 입장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일기본관계조약 틀 내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① 1910년 대한제국의 소멸 → ② 1919년부터 1945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해 임시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교전단체로 승인받지 못한) 광복군 등 여러 독립운동세력의 항일독립운동³⁹⁾ → ③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지역(식민지) 분리 및 전승국의 점령고권에 기한 패전국 영토(식민지였던 곳)에 대한 점령통치, → ④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및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고, 일반국제법과 국제사회의 통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역사인식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점령고권, 대한민국, 건국, 건국절, 국경일

Ruling Power of Occupationnaire, Republic of Korea(ROK), Nation Building, National Foundation Day, National Day

39) 대한제국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또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었다면, 한국민은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립기념관’을 설치·운영하고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보면, 대한제국이 법적으로 소멸, 곧 주권을 상실하였음과 아울러 그 후 어느 시점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독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그 자체 건국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고두현, 보천보 습격 사건, 『한국경제』, 2014년 6월 9일.
- 국방부 정훈국, 정신교육 기본교재,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 2008.
- 국군정신전력학교, 국가상징해설 -태극기·애국가·무궁화, 1985.
- 국토통일원, 민족사적 정통성 연구, 국통조사 86-7-46(재), 1986.7.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11.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7쇄, 법문사, 2005.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올아카데미, 2008.6.
- 김계수,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과 국제연합, 국제문제, 통권 제288호 (1994.8).
-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삼영사, 2010.
- 김덕, 건국 혁명, 산업화·민주화로 결실, 『자유공론』, 2008년 9월호.
- 김명기·김성훈, 국제법학. 일신사, 1980.
- 김명기,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화학사, 1980.
- 김명기,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28권 제1호 (1983.6).
- 김필재, 이승만 항일 없는 교과서, 김일성 항일만 조작 부풀려, 『NewDaily』, 2011년 5월 2일자.
- 김홍일, 제7장 해방과 제3의 김일성 - 이명영 집필 《김일성 열전》, 『중앙일보』, 1974년 8월 2일자.
- 배재식, 남북한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21권 1·2호 합병호 (1976).
- 신기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지위, 한우근 외,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 보완수정판, 일조각, 2007.
- 이승만 정음발언은 소련 전략 꾀꿨은 현실적 대응, 『중앙일보』, 2008년 7월 18일자.
- 이신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현대사포럼, 2011.6.6.
- 이인호, 혁명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 -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 『한국연구재단 웹진: 석학 칼럼』, 2010년 7호 (2010.9)(<http://ssc.nrf.go.kr/>).
- 이주영, 이승만과 그의 시대, 기파랑, 2004.
- 이주영, 조선 멸망 교훈과 건국세력 형성, 국방부, 대한민국: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 2009.
- 이한기, 국제법학(상), 중판, 박영사, 1982.

- 이현표, 태극기를 지킨 건국 대통령, 이승만, 『NewDaily칼럼』, 2015.3.4.
- 인터넷 두산백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 제성호,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법조』, 통권 제632호 (2009. 5).
-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제성호, 건국절 제정해야 한다, 경제풍월, 2011년 10월호.
- 제성호, 상해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14집 1호 (2012).
- 최재훈 외, 국제법신강, 2판, 신영사, 2004.
- 위키백과,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1%B4%EA%B5%AD%EC%A0%88_%EB%85%BC%EC%9F%81).
- 山本草二, 國際法, 新版, 有斐閣, 1994.
- 西侯昭雄, 國際法研究, 明好社, 1970.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IX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Abstract]

Propriety of Establishing National Foundation Day and Some Measures to Promote It

Jhe, Seong-Ho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ROK) was conducted by five stages. It could be enumerated in sequence as follows; national election → formation of National Assembly →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 election of president →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mong them, declaring establishment of government means final or completing step of founding ROK as a new nation. Some people argue for the theory of ROK foundation in 1919. But such argument is not prop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It is becaus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rganized at Shanghai in 1919 didn't have or control a permanent population and a defined territory. Moreover it had not fully exercised a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 In short,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not effective. On August 15, 1948, foundation of ROK was realized and from that time on ROK substantially began to act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 nation building can be said to be revolutionary. Above all, it means the first formation and starting of the republican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it was "liberty revolution", namely, product from free and democratic struggle against socialist revolution strategy by communists i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it was a bell ringing an end of colonial era and a beginning of newly established state all over the world. To sum up, foundation of ROK was very important incident in that Korean people chose a right ideology or system value, that is, "free democracy" in 1948.

ROK accomplish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uccessfully in 67 years. Now it is making efforts to pursue forward as an advanced and first-rate country.

We should find or understand real significations of foundation of ROK. We should deal with the event dually not only by setting up and celebrating National Foundation Day but also by providing an honorable treatment to the persons who had contributed to ROK building.

